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및 일반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직렬 직급을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제5조

2 주요내용

○ 총 정원 조정 내역
- 총 정원 : 11명 순증(1,153→1,164)

○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 6급 : 224명 → 226명(2명 증가)
- 7급 : 352명 → 357명(5명 증가)
- 8급 : 315명 → 313명(2명 감소)
- 9급 : 192명 → 198명(6명 증가)

○ 정원 조정현황

직 렬	정원		조 정 사 유	증 감
	조정전	조정후		
계	299	310		11
6 급	12	14		2
사회복지	9	10	사회복지직렬 인력증원	1
운 전	3	4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7 급	209	214		5
행 정	184	187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력증원	3
세 무	19	20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	1
시설관리	6	7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8 급	30	28		▲2
운 전	23	22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시설관리	7	6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9 급	48	54		6
세 무	5	7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	2
사회복지	43	47	사회복지직렬 인력증원	4

3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015. 11월중

○ 개정규칙안 공포 : 2015. 12월중

4 기 타

○ 예산조치 : 총액인건비 범위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관련법규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및 일반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직렬 직급을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조정 내역

- 총 정원 : 11명 순증(1,153→1,164)

나.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 6급 : 224명 → 226명(2명 증가)
- 7급 : 352명 → 357명(5명 증가)
- 8급 : 315명 → 313명(2명 감소)
- 9급 : 192명 → 198명(6명 증가)

다. 정원 조정현황

직 렬	정 원		조 정 사 유	증 감
	조정전	조정후		
계	299	310		11
6 급	12	14		2
사회복지	9	10	사회복지직렬 인력증원	1
운 전	3	4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7 급	209	214		5
행 정	184	187	조직활성화를 위한 인력증원	3
세 무	19	20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	1
시설관리	6	7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8 급	30	28		▲2
운 전	23	22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시설관리	7	6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1
9 급	48	54		6
세 무	5	7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	2
사회복지	43	47	사회복지직렬 인력증원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2)「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총액인건비 범위내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